

컴퓨터 인터페이스 보호범위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1996

문헌: 법실천의 제문제; 동천김인섭변호사회갑기념논문집

출처: 동천김인섭변호사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790]

I. 머리말

국내외적으로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논의는, 프로그램이 저작물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관한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되는 프로그램의 표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관한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범위, 특히 프로그램코드의 구조, 흐름, 배열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최근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메뉴가 어느 정도로 보호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로 그 논의중심이 바뀌어왔다. 영미에서 최근에는 이러한 프로그램화면의 보호범위에 관한 분쟁과 판례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 및 판례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화면은 프로그램과 그 이용자를 연결지어 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interfaces)인데, 컴퓨터 및 프로그램의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좌우하는 여타의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컴퓨터 인터페이스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용자의 사이에 상호교환, 상호연결 및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인터페이스는 하드웨어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컴퓨터와 호환성이 있는 컴퓨터를 제조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컴퓨터에 응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기초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그 이용자를 연결지어 주는 메뉴화면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써 이용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용자들은 동일한 메뉴화면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메뉴화면의 표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저작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최근에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와 관련해서 어려운 논점의 하나가 되었다. 특

[791]

정 인터페이스를 처음으로 개발한 자는 자신의 인터페이스의 되도록 많은 요소에 대해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기를 바라는 반면, 후발 개발업자들은 기존 인터페이스의 되도록 많은 요소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용자들은 인터페이스의 동일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인터페이스를 둘러싼 이와 같은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대한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인터페이스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모두 인터페이스의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의 메뉴화면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전자오락용프로그램의 화면도 프로그램과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인터페이스의 하나이지만 상당한 예술성과 창작성이 가미된 전자오락 화면들은 통상의 문예저작물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터페이스로서의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가 없다.주1) 어려운 문제는 전자오락 이외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메뉴화면, 특히 메뉴화면 가운데 일정한 명령어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그림이라든지 또는 명령어 약자 등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메뉴화면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해 프로그램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를 "Look and Feel"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판례와 학설이 많이 나와 있다. 인터페이스가 한국과 일본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언어"또는 "규약"에 해당되는 한도에서 저작권보호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규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페이스의 저작권보호범위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될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참고로 해야 할 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독일에서의 인터페이스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창작성 요건이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유럽공동체지침은 창작성에 관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즉, 유럽공동체지침은 저작권보호가 프로그램의 표현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에는 저작권보호가 미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더 나아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의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에 보호되고 이러한 창작성

[792]

기준 이외의 어떠한 다른 기준도 보호요건의 판단에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 인터페이스의 보호 여부 또는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유럽공동체지침의 이러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및 창작성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를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 데 반하여, 창작성요건은 특히 독일에서와 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창작성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공동체차원에서 방지하고 공동체 전체에 걸쳐서 창작성기준을 다소나마 통일시켜 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독일법원은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해 왔고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해서도 통상적인 프로그램수준을 뛰어넘어서 명백히 뛰어난 창작성을 갖춘 컴퓨터프로그램만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지만, 유럽공동체지침이 마련됨으로써 독일저작권법도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 개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질적인 기준이나 미학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게 된 것이다.주3) 이러한 독일연방저작권법 개정에 따라서 창작성기준이 낮아진 것이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서도 방론으로서나마 확인된 바도 있다.주4) 창작성기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모든 인터페이스 또는 모든 메뉴화면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극히 사소한 변경이나 추가만으로는 창작적인 것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메뉴화면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메뉴화면의 저작권법적 보호가 인정된 최초의 사건으로 "Betriebsratsprogramm"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피고 프로그램은 모두 노동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언어는 각각 dBASE와 Clipper라고 하는 상이한 언어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복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만하임 지방법원은 양 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화면이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화면의 유사성이 바로 프로그램의 복제 사실에 대한 간접증거가 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맡은 칼스루에주 고등법원은 화면의 유사성이 프로그램 복제사실에 대한 간접증거가 된다고 한 지방법원의 판시에는 반대하면서도, 메뉴화

[793]

면 자체가 프로그램의 표현이고 그러한 표현방법에 많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메뉴화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초기의 주메뉴화면은 노동자위원회 조직과 프로그램기능에 비추어 다양한 표현선택의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보호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계속 이어지는 화면은 프로그램의 표현으로서 표현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보호대상으로 된다고 전제하면서 동 메뉴화면의 유사성은 프로그램저작권침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된 것이다.주5)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주메뉴화면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화면들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그에 대한 저작권보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주6)

III. 영국에서의 인터페이스

영국의 프로그램업자들도,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규모의 선발업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컴퓨터 및 프로그램과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또한 거의 표준화되다시피한 미국 프로그램의 메뉴화면과 전혀 상이한 메뉴화면을 새로 개발해 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으로서, 인터페이스 및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보호범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페이스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메뉴화면의 보호범위와 관련해서 우선 논의되는 것은, 메뉴화면을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코드에 대한 저작권이 메뉴화면에까지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메뉴화면의 특징의 그림이나 약어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코드도 하나가 아니고 프로그램업자에 따라서 상이한 코드로 동일한 그림이나 약어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코드에 대한 저작권이 메뉴화면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이 반드시 프로그램코드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주7)

[794]

메뉴화면도 다른 인터페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은 메뉴화면의 각 요소들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후발 개발업자들은 기존 메뉴화면의 여러 가지 그림과 약어들이 특정명령어의 통상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독창성이나 창작성(originality)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특정메뉴화면에 익숙해지면 상이한 메뉴화면을 배우는데 또 다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프로그램

업자의 입장에서,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메뉴화면의 통상적인 그림이나 표현은 자유로이 이용해야 할 것이고 메뉴화면의 기타의 요소에 있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의 독창성이나 창작성만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주8) 따라서, 메뉴화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보호를 인정하면, 후발 개발업자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장에 침투해 들어가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이 현저히 저해되고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주9)

타인의 메뉴화면을 아무런 수정 없이 똑같이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만, 인터페이스로서의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이 통상의 문예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다 좁은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주10) 문예저작물의 경우에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표현이 발휘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인터페이스는 소위 기능적 저작물(functional works)이고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메뉴화면의 경우에는 표현방법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British Leyland v. Armstrong Patents, Ltd.주11) 에서 영국대법원은 기능적저작물의 하나인 자동차부품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동차부품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면 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 경쟁 및 산업발전이 커다란 피해를 받는다. 따라서, 프로그램산업에서의 경쟁을 높이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로서의

[795]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된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IV. Richardson사건

영국의 지방법원 지적소유권 담당부(the Chancery Court of the English High Court of Justice)가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non-literal program elements) 특히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호범위 또는 유사성의 판단을 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John Richardson Computers, Ltd. v. Flanders, and Chemtec, Ltd.주12) 사건이다. 하지만, 그 판결문의 내용은 많지만 그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공동체지침과 영국에서의 동 지침 시행에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는 호환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원이 Computer Associates사건에서의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호환성에 관한 논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Richardson사건의 담당법원이 Computer Associates판결에서의 방법론과 보호범위에 관한 판단을 원용하려고 한 사실은 영국의 법원 역시 그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공동체지침의 제1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인터페이스 사양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없다는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1년 후에 다른 영국법원은 "상세한"아이디어는 영국의 저작권법리상 보호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Computer Associates사건의 판단을 적용하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공동체지침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1. 사실관계

Richardson사건에서 원고인 John Richardson Computers, Ltd.("JRC")는 1982년 영국의 약사들이 그 조제한 약에 레이블을 붙이고 재고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Video Genie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설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JRC의 피용인인 피고 Flanders에 의하여 다른 컴퓨터(650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BBC 미니 컴퓨터)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다음 해

[796]

에 개작되기도 하였다.

1987년 JRC를 떠난 Flanders는 아일랜드시장에서 IBM PC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고안된 Pharm-Assist라는 이름의 약국 레이블작성 및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Quick Basic으로 작성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JRC의 BBC 프로그램과는 상당히 달랐다. 왜냐하면 영국과 아일랜드의 약국시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가 이 프로그램은 IBM PC의 상당히 강력한 성능과 향상된 특징들을 활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Flanders는 1988년 아일랜드에서 Pharm-Assist 프로그램을 시판하였다. Flanders는 JRC에게 영국 시장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시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JRC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Flanders는 영국에서의 시판을 위하여 Chemtec, Ltd.를 설립하였다. JRC는 1990년 Flanders와 Chemtec, Ltd.사가 BBC 프로그램에 대한 JRC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비문자적 요소의 침해 주장에 대한 접근방법

JRC는 BBC와 Chemtec 프로그램 사이의 소스 코드상의 유사성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JRC는 비문자적 요소에 관한 유사성을 주장하였는데 즉 원고는 피고가 BBC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를 복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채택되어야 할 접근방법을 규율하는 어떠한 영국법(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미국법(판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법원은 먼저 Whelan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Whelan Associates, Inc. v. Jaslow Dental Lab., Inc.주13) 사건에서 제3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은 "구조, 배열 및 흐름"등도 보호하는 것이고 단순히 프로그램의 문자적 부분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인정하였다. Whelan사건에서 미국연방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이란 오직 하나의 아이디어, 즉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 기능인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Richardson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곧이어 Whelan판결을 무력하게 만든 Computer Associates사건도 자세히 평가하고 있다. Computer Associates v. Altai주14) 사건에서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문자

[797]

적 요소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는 Whelan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다양한 하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진 것이고 이러한 하부프로그램의 구체적 표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에 대한 표현부분을 침해한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위 "3단계의 추상화-여과-비교"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미국 판례의 검토에 기초하여, Richardson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저작권이란 프로그

램의 소스코드의 문자적 요소를 넘어 비문자적 요소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만일 Flanders가 BBC 프로그램의 요소를 복제했다고 판단되면 Computer Associates의 분석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유사성의 분석

비문자적 요소의 복제가 문제된 사건에서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Richardson사건을 담당한 영국법원은 사실관계를 분석 평가했다. 먼저 두 프로그램 사이에 "객관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법원은 문제된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 구성요소로 해체하여 17가지 객관적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 유사성이 복제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법원은 Flanders가 BBC 프로그램을 복제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는 BBC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없이 Chemtec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Flanders가 "모든 추상화 단계에 있어서 BBC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러한 지식을 복제에 이를 정도로 이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유사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법원은 BBC 프로그램의 "실질적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의 복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법원은 그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인지 여부는 그 양보다는 그 질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창작성이라는 기준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라는 기준이, 객관적 유사성의 질적 판단 또는 복제되었다고 말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실질적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객관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17개의 요소에 대한 보호가능성 여부를

[798]

검토하였다. 법원은 명시적으로 융합의 법리(merger doctrine)를 언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아이디어와 그 표현이 융합되어지기 때문에 몇 개의 요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예컨대, 문제된 프로그램들에서 낱자의 입력 절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표현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즉, 낱자를 입력하는 프로그램 요소를 만드는 경우에, 그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점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레이블 입력절차에 관하여 법원은 그 유사성은 매우 제한된 대안 사이의 상식적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스크린에 최소재고량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 또는 이를 레이블에 출력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아이디어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보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끝으로 법원은 두 개의 프로그램의 재고관리의 성능은 거의 같은 기능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지만 관련된 코드의 복제는 입증되지 않았고 그 구조나 조직의 유사성에 관해서도 낱자입력이나 레이블 출력에 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법원은 17개 중 14개의 요소를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로서 걸러냈다. 나머지 3개의 요소는 출판집기, 수정 루틴, 그리고 약복용량 지시코드로서 이는 BBC 프로그램의 실질적 부분에 대한 복제의 결과라고 하였다.

법원은 14개의 유사한 요소는 그 자체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조합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가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표절자는 편집물의 저작권을, 별개로 보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이들의 전체적 구성을 함께 복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침해가 행하게 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그 표절자가 편집물의 상당부분을 취한 결과 편집자의 노력과 기술의 소산인 실질적인 부분을 취한 것이 되었는지 여부가 된다. 즉, 구성부분의 선택과 배열 기타 편집물에서 저작권을 야기시키는 요소 등이 그것이다." 법원은 BBC 프로그램의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이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프로그램에서의 작가의 노력과 기술은, 특정요소를 선택하여 전체적인 조합을 이룬 그 선택이나 특정순서로의 배열에 있다기보다는 그 구성요소 자체의 고안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비록 분명 그것이 노예적 복제(literal copying)가 아니고 적은 부분에서의 상당히 작은 침해였음에도 불구하고 BBC 프로그램에서의 JCR의 저작권의 다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침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있다.

[799]

4. Richardson판결의 의미

Richardson판결은 몇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Computer Associates의 판결이 보호범위와 침해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Richardson사건을 담당한 영국법원이 비록 Computer Associates 추상화-여과-비교의 기준을 그대로 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s)를 그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각각의 요소가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참고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Richardson의 법원이 Computer Associates판결에서 제시된 침해판단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실은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Computer Associates판결이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보호론자의 비판이 설득력 없음을 잘 보여 준 결과로 되었다.

두 번째, 어떠한 영국의 법원도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Richardson사건의 법원은 영국 저작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보호를 미국의 그것과 더욱 가깝게 하였다. 특히, 영국 법원은 비문자적 요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Computer Associates판결을 적용함으로써 영국법을 미국법에 더욱 가깝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여과함에 있어서 아이디어/표현 융합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이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영국 법원이 Computer Associates판결 또는 여과기준을 원용하는 선례를 보임으로써, 인터페이스 사양의 보호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장래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 공동체지침의 제1조 제2항을 마찬가지로 해석·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이다.

다만, 동 판결에서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 점으로는, 화면표시(screen display)는 그 자체로 어문저작물이 아니고 따라서 화면표시는 본 사건에서는 관련저작권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여 주는 한도에서만 고려되어질 뿐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동 판결문의 후반부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명백히 모순된다. 사실, 법원은 화면표시와 같은 프로그램의 외부적 특징에만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결코 내부의 프로그램 코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800]

5. IBCOS Computers, Ltd. v. Barclays Mercantile^{주15)}

Richardson판결이 있는 지 1년 후 어떤 사건에서 다른 영국 법원이 영국저작권법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상당히 다르다는 근거로 Computer Associates의 법리를 배척한 사례가 있다. IBCOS Computers, Ltd. v. Barclays Mercantile^{주16)}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Agricultural Dealer System(ADS)를 개발한 회사의 조합원이었다. 이는 농기계 판매상의 일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였다. 피고는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팔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ADS와 경쟁관계에 있는 Unicorn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판하기 시작하였다. 법원은 양 프로그램 사이에 코드나 구조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를 볼 때 이러한 판단이 추상화의 낮은 단계에서의 유사성에 기초했다면 법원의 침해 인정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Jacob 판사가 판결문에서 제시한 저작권 법리는 Richardson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관하여 Jacob판사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독창적인 저작물이 이를 내재하고 있더라도 단순한 아이디어의 채택은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구체화된다면 저작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하여 Jacob 판사가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관하여는 아이디어/표현 융합(merger of idea and expression)의 법리를 배척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명백히 미국저작권법리와 영국 저작권법리를 구분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저작권법은 영국의 그것과 같지 아니한데 특히 미국저작권법은 가능성이 중요시되는 소위 기능적 저작물(functional works)의 보호에 인색하지만 영국저작권법은 관대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국저작권법은 미국저작권법 제102조 제b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영국 법원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관한 Baker v. Selden의 판결과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가능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저작권을 배제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영국 법원은 저작권에 의하여 가능성까지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Richardson건에서 미국의 판례와 Computer Associates에서 영향받은 Ferris 판사보와 견해를 달리했다. 즉 그는 미국 판례법을 통하는 것이 도움을

[801]

줄 수 있다고 보지 않았고, 영국저작권법이 단순한 일반적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은 보호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detailed idea)의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해석된다고 한다. 영국이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공동체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법안을 기안한 통상산업부(DTI)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영국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라는 근거에 기초하여 동지침 제1조 제2항이 삽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분명히 Jacob 판사와 DTI는 영국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의 이해에 있어서 Richardson법원과 매우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V. 유럽공동체지침

영국을 비롯한 유럽공동체회원국들은 유럽공동체지침(Directives)주17)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국내법화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 관해서도 1991년 5월 14일에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영국 저작권법도 그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지침"(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이하에서는 "프로그램지침"이라고 약칭함)은 2년 이상에 걸쳐서 그에 관한 수많은 토론과 관련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공동체회원국들은 1993년 1월 1일까지 그 내용을 국내법화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지침은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도 언급될 가치가 있다. 프로그램지침은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언어와 해법 및 규약이 당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한도에서 그러한 원칙들과 아이디어는 본 지침하에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과 아이디어도 본 지침하에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8) 프로그램언어와 해법 및 규약의 보호범

[802]

위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와 유사하지만, 프로그램지침하에서는 프로그램언어와 해법 및 규약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모두 저작권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한도에서만 저작권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지침이 과연 프로그램언어와 해법 및 규약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관한 보호범위를 좁힌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보호범위는 특히 호환성 확보를 위한 리버스엔지니어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유럽공동체지침은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들을 파악하고 그럼으로써 당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연구 및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거나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등의 일시적 복제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9) 또한 이와 같이 호환성 확보를 위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기 위해서 법정된 저작권제한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배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0) 그러나,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복제와 변환(원시코드로의 변환)을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프로그램지침은 규정하고 있다.주21) 프로그램이 목적코드(object

[803]

codes)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의 호환성에 관한 정보가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원시코드로 변환해서 분석 연구해 보아야, 호환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에서 저작권의 제한이 인정된 것이다. 호환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 자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표현"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아닌 한 기존의 프로그램과 경쟁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주22) 리버스엔지니어링을 위해서 프로그램지침에 인정된 저작권 제한은 획기적인 규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저작권 제한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호환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이 이미 그들의 인터페이스 등과 같이 호환성에 관한 정보를 사용안 내서 등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와 변환과 같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주23)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관한 이러한 프로그램지침은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에게 그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인터페이스에 관한 공개된 정보에 입각해서, 공동체 단일시장(single market) 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터페이스, 예컨대 편리한 입력명령어(input-command language)주24) 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s

[804]

)주25) 에로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주26)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표현만을 보호할 뿐이고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리의 반영이기도 하고,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기초가 되고 있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저작권의 남용에 해당되고 독점금지법에도 반한다는 최근 판례주27) 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VI. 미국에서의 인터페이스

미국에서도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관한 논의가 완성하고 특히 프로그램사용자와 프로그램과를 연결지어 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관한 판례도 많이 나와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하나로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 정리, 처리, 저장 및 출력하기 위한 '일정한 자판조작과 간략한 명령어'로 구성된 입력명령어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입력명령어(input-command language)가 어느 정도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지가 최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미국의 판례들은 상충된 견해들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Lotus Development Corp. v. Paperback Software Int'l주28) 사건에서 관할 연방 지방법원은 Lotus 1-2-3의 입력명령어와는 상이한 표현의 입력명령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된 Lotus 1-2-3의 입력명령어는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Lotus판결과는 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판례도 있다. 예컨대, Ashton-Tate Corp. v. Ross주29) 사건에서 유명한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 dBASE를 개발한 Ashton-Tate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Ross가 제안한 입력명령어

[805]

를 채택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고, Ross는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정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Ashton-Tate는 Ross가 제공한 입력명령어가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표현이 아니라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아이디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Ross는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미연방항소법원은 Ashton-Tate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Ashton-Tate Corp. v. Fox Software, Inc.주30) 사건에서 원고 Ashton-Tate는 피고 Fox가 원고프로그램의 입력명령어를 모방해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이 오래 전에 Jet Propulsion실험실에 의해서 개발되어 이미 공유화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로 저작권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자신의 저작권 범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로 저작권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권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들 두 판례가 입력명령어의 보호범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공동저작물의 성립 부인 또는 저작권등록의 무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입력명령어의 저작물성 또는 그 보호범위를 다루고 있지만, 앞에서 본 Lotus판 결과는 전혀 달리, 저작권법에 의한 입력명령어의 보호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프로그램언어'는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주31) 입력명령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언어라고 볼 수 있는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1) 메뉴화면

최근 많이 문제되어 온 메뉴화면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어지고 판례도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Broderbund Software, Inc. v. Unison World, Inc. 주32) 는 컴퓨터의 메뉴화면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깊이 있게 다룬 최초의 판결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Pixellit사는 greeting card를 작성하는 print shop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원고 Broderbund는 이 프린트숍 프로그램의 독점적 사용자

[806]

락(exclusive license)을 얻어서 그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 프린트숍 프로그램은 곧 이어 애플 컴퓨터용의 프린트숍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피고 Unison World는 원고의 프린트숍 프로그램을 IBM컴퓨터기종에 맞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프로그램개발 담당자는 원고가 제공한 프린트숍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독자적으로 IBM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rintmaster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프린트마스터는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지만, 프린트숍 프로그램의 메뉴화면과 아주 유사한 메뉴화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메뉴화면에서의 표현이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의 특징으로 인하여 아이디어와 구별되기 어렵고 표현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인정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다. 피고가 원용한 소위 아이디어/표현 융합이론(merger doctrine)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경쟁사들의 프로그램이 아이디어는 똑같으면서 전혀 다른 표현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반박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특히, 법원은 Whelan Associates, Inc. v. Jaslow Dental Laboratory 주33) 판결을 원용하면서, 원피고의 프로그램 메뉴화면들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메뉴화면의 전체적 구조, 순서 및 배열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Broderbund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프로그램의 원시코드(source code)까지 참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원고도 자신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었고 오직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저작권과 그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이 각각 별개의 것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이용되는 일련의 명령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프로그램코드의 범위를 넘어서 그의 메뉴화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성문법적 근거는 없다.

저작권법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과 그것이 만들어 낸 메뉴화면이 별개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킨 Whelan주34) 판결을 비롯한 기존의 판례에도 반하는 것이다. Whelan사건에서 법원은 메뉴화면의 유사성이

[807]

프로그램의 무단복제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증거는 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프로그램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과는 다른 별개의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판시했다.주35) 상이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동일한 메뉴화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뉴화면의 동일성이 반드시 프로그램이 무단복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Digital Communications Associates v. Softklone Distributing Corp.주36) 판결에서 명백히 판시되었다. 전술한 Broderbund v. Unison주37)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당해 프로그램의 메뉴화면의 구조, 순서, 배열에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인 데 반해서, Digital Communications Associations, Inc. v. SoftKlone Distributing Corp.주38) 에서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당해 프로그램의 메뉴화면에까지 당연히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Broderbund판결과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Digital v. SoftKlone판결은 메뉴화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해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결과에 있어서는 Broderbund판결과 같 이하고 있다.

Digital v. SoftKlone사건에서 원고 Digital은 컴퓨터시장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데이터통신프로그램 "Crosstalk"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당해 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은 "프로그램용어의 편집저작물"로서 그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등록도 되어 있었는데, 피고 SoftKlone측은 시판중인 원고의 크로스토크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은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변호사 조언을 토대로 하여 원고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을 갖고 동 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을 사용하여 새로이 제작한 Mirror라고 하는 통신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 크로스토크의 주메뉴화면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설사 주메뉴화면이 저작물에 해당되더라도 원고가 당해 주메뉴화면에 저작권의 표시(copyright notice)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public domain)로 되어

[808]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동 주메뉴화면의 윗쪽에 파라미터 또는 명령어가 열기되어 있고 그 기능별로 그룹화되어 있으며, 각 파라미터 또는 명령어의 우측에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숫자 또는 문자로 쓰여진 값이 표시되어 있어서 동 숫자를 통하여 다른 컴퓨터와 통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동 숫자나 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바,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우선 주메뉴화면의 저작

물성에 관해서, 프로그래머에 의한 상당한 창작적 산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어야 할 일종의 편집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program code의 복제가 없더라도 주메뉴화면의 복제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저작권표시에 관해서는, 원고가 주메뉴화면에는 저작권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시작하면 주메뉴화면이 나오기 이전단계의 초기화면에서 저작권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주메뉴화면을 복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메뉴화면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한 것이라고 판시되었다. 더 나아가 연방지방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이 원고의 그것과 그 배열과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

SoftKlone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Broderbund판결과는 상이한 이론구성을 택하고 있다. 즉, 메뉴화면이 프로그램코드를 완성하기 훨씬 이전에 도안되는 것이 보통이고 메뉴화면이 프로그램코드의 복제물이라거나 개변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코드에 대한 저작권이 메뉴화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Manufacturers Technologies, Inc. v. CAMS, Inc.주39)에서 컴퓨터프로그램과 그 메뉴화면에 대해서 단일의 저작권등록만이 이루어져 있는데, 법원은 그 단일의 등록을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메뉴화면을 위해서 한 별도의 두 개의 저작권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했다.

(2) 판례분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oftKlone사건에서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과 그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이 별개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Broderbund사건에서처럼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있음을 인정한 점에서는 SoftKlone판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두 사건에서의 법원은 모두 메뉴화면이 프로그램과 그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Broderbund사건에

[809]

서 원고 프로그램의 메뉴화면은 어른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페이스인 데 반해서 피고 프로그램의 메뉴화면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고, 두 메뉴화면 사이의 유사성이 반드시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는 것은 메뉴화면의 인터페이스로서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들은 꼭같이 그 이용자들이 하여금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정보나 명령들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도록 도와주는 매체이고, 따라서 그러한 인터페이스는 극히 유사한 명령어를 포함하고 유사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10여년 전에 나온 판결 Synercom Tech., Inc. v. Univ. Computing Co.주40)에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시키는 양식을 담은 카드는 정보입력을 위한 매체로서의 기능으로 인해서 그 표현방법에 커다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카드에 대한 저작권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된 바 있다. 메뉴화면도 컴퓨터에 일정한 정보를 입력시키기 위한 매체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Synercom판결은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메뉴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복제한 경우에는 물론 그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침

해에 해당됨이 명백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메뉴화면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많이 발휘된 부분에 대해서 그 표현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모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주41) 이러한 맥락에서 특기해야 할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CAMS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메뉴화면에 있어서 커서(Cursor)를 움직이기 위해서 선택한 명령어들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부인했다. 표현방법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소위 기능적 저작물(functional works)의 경우에는 저작권보호가 원칙적으로 부인될 수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판례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메뉴화면의 저작권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한 일

[810]

련의 기존 판례는 프로그램 개발업자에게 투자회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프로그램개발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적 의욕을 고취하는 데 그칠 뿐이고, 프로그램산업전체의 기술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의 메뉴화면에 관한 상이한 표현방법은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메뉴화면에 대해서 넓은 범위의 저작권보호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메뉴화면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선발 프로그램업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는 반면, 기존의 메뉴화면에 의존해야 하는 후발 프로그램업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어 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이 크게 제한된다.주42) 예컨대, 위에서 살펴본 Broderbund사건에서 Apple기종의 컴퓨터에 이용되는 원고의 메뉴화면에 저작권보호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한 결과, 피고가 IBM 기종의 컴퓨터에 이용될 프로그램과 그 메뉴화면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기술적 기여가 저지되어 버렸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SoftKlone사건에서, 원고의 메뉴화면에 나오는 명령어의 약자들은 후발 프로그램업자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프로그램산업에서의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고 프로그램이용자들도 명령어 약자들의 표준화로 인해서 이용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하겠다.주43)

메뉴화면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저작권보호의 악영향, 특히 경쟁제한적 효과는 그 후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한 과보호 경향의 판결들에 영향을 받아서, 유명한 맥킨토시 컴퓨터 메뉴화면을 개발한 Apple과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업자들은 그들의 소규모 경쟁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로그램업계의 압도적인 견해는 그들 침해소송이 관련시장에서의 기존의 경쟁을 없애고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한 공작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주44) 이들 소송에서 선발 프로그램업자인 원고들은 자신의 메뉴화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저작권보호를 주장하고 있어서, 법원으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 원고들이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소송을 견뎌냄으로써 승소하고 후발 프로그램업자

[811]

들의 경쟁을 물리치며, 관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메뉴화면의 저작권보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가 특허권에서와는 달리 메뉴화면에 대한 아무런 심사도 없이 보호가 시작되고 저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보호가 계속된다는 점에 그 독점의 커다란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VII. Lotus v. Borland사건

최근의 판결로서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은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ational, Inc.주45) 판결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제1순회항소법원은 Lotus의 명령어구조는 "조작의 방법(method of operation)"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물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과 그 보호범위에 커다란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1. 사실관계

Lotus사와 Borland사 사이의 분쟁은 컴퓨터용 표계산프로그램(electronic spreadsheets)에 관한 것이다. Lotus사는 "Lotus 1-2-3"이라는 이름의 표계산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Borland사는 "Quattro"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컴퓨터용 표계산프로그램은 보통의 손으로 작성하는 표계산장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로 하여금 수치데이터를 정리·조작하고 간결히 정리된 형식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Lotus 1-2-3은 행(rows)과 열(columns)로 구성된 격자를 컴퓨터모니터의 화면에 표시하고, 그러한 행의 왼쪽 끝부분에는 일련번호가 그리고 열의 위쪽 끝부분에는 영문 알파벳이 순서대로 매겨져 있다. 각각의 행과 열이 교차되는 부분에는 데이터가 기입되는 공간인 셀(cell)이 만들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일련의 "메뉴명령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조작 및 통제할 수 있다. 예컨대, 메뉴명령어들인 "copy," "print"및 "quit"등은 모두 당해 명령어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특정 '기능'들을 정의하고 있다. 메뉴에 의해 조종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용자는 원하는 메뉴명령어를 하이라이트시켜서 선택함으로써 명령하거나 또는 당해 명령어의 영어단어에 상당하는 문자키를 모두 입력(타이핑)하여 명령하는 방법을 선택

[812]

할 수 있다. Lotus 1-2-3 프로그램은 또한 이용자 자신의 "매크로 언어"를 만들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는 여러 개의 명령어 키들을 간략한 키조합으로 단축시켜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Quattro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Lotus모방형 인터페이스(Lotus Emulation Interface)"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Quattro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화면에 Lotus의 메뉴명령어를 볼 수 있게 해 주어서 마치 Lotus 1-2-3을 이용하는 것처럼 Quattro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즉, Quattro 이용자는 하나의 표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두 가지의 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바, 그 하나는 Borland사가 디자인한 메뉴명령어에 따라서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Lotus 1-2-3의 명령어구조를 토대로 하면서 Borland사의 명령어가 보충되어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Borland는 자사제품과 Lotus 1-2-3과의 부분적인 호환성은 Quattro의 "Key Reader"기능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 기능의 특징은 화면표시, 기능조작 및 매크로수행 등에 관한 Quattro의 메뉴를 이용함과 동시에 Lotus 1-2-3의 사용을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매크로를 Quattro에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에 Lotus 1-2-3을 사용했던 이용자라고 해도 Quattro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존에 정의해 둔 매크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otus모방형 인터페이스"가 화면에 직접적으로 메뉴명령어를 보여 주는 형식과 달리, "Key Reader"는, 화면상에 Lotus 1-2-3의 메뉴명령어구조를 표시함이 없이 단순한 매크로 인터페이스로서

만 작동할 뿐이다. 따라서 Quattro의 이용자가 Lotus 1-2-3 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체 저장된 Lotus 1-2-3 메뉴구조를 그 매크로의 번역수행을 위해 그때그때 참조 내지 분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지방법원의 판결

연방지방법원판사 Keeton은 Lotus 1-2-3 메뉴명령어와 메뉴명령어구조는 "보호가능한 표현의 요소(elements of protectable expression)"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2순회 항소법원의 Computer Assoc. Int'l, Inc. v. Altai, Inc.주46) 판결에서 이미 "추상화(abstraction)-여과(filtration)-비교(comparison)"의 기준이 채택되어진 바 있는데, Keeton 판사의 판사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기준을 따른 것이다. 실제로 Keeton 판사는 자신이 채택한 기준이 바로 제2순회항소법원의 기준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813]

첫번째, "추상화"의 문제에 관하여 Keeton 판사는 Lotus 1-2-3 프로그램의 "Idea"부분을 공식화하여 표현하는 서로 대체가능한 방법들을 예시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Lotu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메뉴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각의 메뉴는 10개 남짓의 명령어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주메뉴가 뿌리 내지 몸통을 이루어 하위메뉴가 상위메뉴에서 갈라져 나오는 방식으로 나무구조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하위메뉴는 각각의 상위메뉴 명령어의 조작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Lotus 1-2-3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특정기능들이 위와 같은 메뉴명령어계층구조의 경로를 통해 선택 및 수행되어질 수 있다."

"여과"의 단계에서 Keeton판사는 먼저 명령어구조의 일정한 측면들이 기능적인 고려사항(예컨대, 명령어의 사용빈도)들에 의하여 강제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적어도 수백개, 내지 수천개의 서로 다른 기능표현이 가능한 비기능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Lotus는 이러한 메뉴명령어구조들 중의 특정구조를 선택하여 Lotus 1-2-3에 내장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eeton 판사가, 개인적으로 정의된 매크로 내지 키조작순서(key stroke sequences)에 대해 표계산프로그램의 명령어구조가 필연적으로 자체적으로 내장되게 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메뉴명령어구조가 저작권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Keeton 판사는 메뉴명령어와 메뉴구조의 그러한 기능적인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융합(Merger)의 법리에 의해 "Idea"로서 여과되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당해 메뉴명령어와, 메뉴구조는 그 메뉴명령어와 메뉴구조의 기능과는 분리되는 표현적 측면-즉 단어의 선택과 메뉴에서의 그 단어들의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Borland의 "Key Reader"에 관하여 Keeton 판사는 Borland가 그 Lotus 1-2-3의 매크로를 사용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가상메뉴(phantom menu)의 기능안에서 복제한 것은 Lotus 1-2-3의 메뉴구조의 표현적 측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특히 Keeton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Lotus 1-2-3의 메뉴구조와 조직의 사실상 동일한 복제가-Lotus 1-2-3의 당해 구조를 획정하는 명령어의 첫글자나 기타의 표시를 이용함으로써-그 가상메뉴 안에 포함되어 있다. Borland의 제품이 Lotus의 프로그램코드나 실행중 이용자에게 직접 표시되는 메뉴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코드나 메뉴구조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Borland에 의하여 복

제된 부분(메뉴구조의 상

[814]

세한 표현)이 사실상 Lotus 1-2-3 프로그램의 메뉴구조의 상세한 표현부분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3. 제1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제1순회항소법원은 Baker v. Selden사건의 판단이 여기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Borland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본 항소사건은 컴퓨터운영에 이용되는 명령어에 대한 Lotus사의 독점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Altai사건에서 제시된 분석방법론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Altai사건의 분석방법론을 통하여, 하나의 컴퓨터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코드의 비문언적 표현(non-literal expression)을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모색하였다. 법원은 그 다음 본 사건은 Borland가 Lotus의 명령어구조를 고의적으로 문언적으로 복제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ltai사건의 분석은 여기서 적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Keeton 판사의 판단을 뒤집고 Lotus의 명령어구조는 "조작의 방법(method of operation)"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물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법원은 모든 "조작의 방법"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 (b)항의 범문에 의존하였다. 법원은 Lotus의 명령어구조가 Lotus 1-2-3의 조작 및 통제의 수단이고 이러한 명령어구조가 없다면 이용자는 Lotus 1-2-3의 수행기능을 접근, 통제 및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명령어구조에서 "표현"을 확인한 Keeton 판사의 견해를 배척하고 특정단어가 일정한 물건을 조작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경우 이것들은 "조작의 방법"이 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제1순회항소법원은 Lotus 프로그램의 메뉴명령어구조를 VCR의 버튼에 비유하여, VCR에 달린 조작버튼이 "어문저작물" 내지 VCR의 추상적 조작방법의 "표현"이라기보다 버튼 자체는 곧 VCR의 "조작방법"이라고 가정하고, "Lotus의 명령어는 VCR의 버튼에 붙여진 레이블에 상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버튼 자체, 즉 조작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그들의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제1순회항소법원은 "법원으로서 여전히 특정표현이 저작권법 제102조 (b)항에 의하여 저작권보호로부터 배제되는 여러 범주들 중 하나-예컨대, 조작의 방법 등-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815]

VIII. 일본에서의 컴퓨터화면

일본에서는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나 저작권법 규정이 없다. 오직 인터페이스가 보호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요소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거나 창작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인터페이스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까지 도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동경고등법원은 1989년에 "프로그램은 이를 표현하는 기호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 체계(문법)도 엄격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작동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시 명령의 조합이 필연적으로 유사해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고, 따라서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침해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면서(주47)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기준을 제시한 이래로 1992년에 다시 프로그램의 창작성 결여를 이유로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인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EO System 프로그램은 "시판되는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자동적으로 저장하여 메뉴방식으로 불러내는 등의 관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동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IBF 파일은 시판되는 응용 프로그램 등을 하드디스크에 옮기기 위한 지시 및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파일인바, ① ID 행, ② 타이틀행, ③ 디바이스행, ④ 구분표시행 1, ⑤ 명령행, ⑥ 구분표시행 2, ⑦ 편입 메시지행, ⑧ 편입순서행, ⑨ 종료표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은 가사 IBF 파일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편입대상인 응용 프로그램 등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IBF 파일은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청인의 항고에 대하여 동경고등법원은, EO System이 각 응용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에 심어 주는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IBF 파일은 MENU.EXE 프로그램에 임혀져 편입된 정보(응용 프로그램의 타이틀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컴퓨터에 대한 명령의 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며, IBF 파일자체가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를 기능하게 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을 심어 주는 것도 아니라고 전제한 후, 따라서 IBF 파일의 기술내용은 당해 EO System에 데이터로서 임혀지는 단순히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고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이

[816]

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주48) 요컨대 동경고등법원에 의하면 IBF파일이 프로그램저작물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지만 설사 동 파일이 편입정보를 나열한 어문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동경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등 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이 단순히 독자적으로 창작한다고 하는 것 이상의 기준이 법원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화면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게임화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종이면서도 상당한 예술적 측면을 내포한 다양한 음성과 화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작물성이라거나 그 보호범위의 판단에 있어서 전통적인 저작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일본의 판결 가운데 게임화면의 주지성과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 주목된다. 즉, 스페이스 인베이더(space invader)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동경지방법원은 "텔레비전형 게임기의 수상기에 영사되는 인베이더(invader) 등 영상 및 게임의 진행에 따라 그 영상이 변화되는 태양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상품표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게임 중 UFO의 배열 및 변화의 형태, 출현상황 및 게임방법을 변형시켜 이를 시판하는 것은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기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주49)

IX. 현행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나 성문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이나 보호범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정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적용제외대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적용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간접적인 판례로 저작물의

[817]

창작성기준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주50) 인터페이스의 창작성기준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일 것이다.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에 관한 개념정의 규정과 함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소들도 상세히 규정해두고 있는바, 이 점에서 영미법과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동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주51) 이러한 적용제외에 관한 조항을 둔 취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써 후속개발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이 "아이디어, 절차, 공정, 체계, 운용방법, 개념, 원칙 및 발견행위"를 저작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주52) 프로그램보호에서의 특별한 적용제외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저작권법은 우리 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마찬가지로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주53) 프로그램언어·규약·해법은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dBASE와 동일한 명령어와 문법체계를 가지는 Clipper와 Foxbase 등은 dBASE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동일한 명령어를 컴퓨터에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표현 자체를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됨은 물론이다.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와 가장 밀접히 관련된 적용제외항목은 프로그램 규약일 것이다. 프로그램규약은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또는 그 사용방법을 기술한 일종의 사용설명서이다. 이에, 규칙 또는 규약으로서 프로그램과 시스템분석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표준적인 규칙, 약어 그리고 개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약속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예컨대 Window SDK(Software Development Kit)), Protocol 등이 그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규약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단순히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을 재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표준화 및 경쟁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법

[818]

정책적 목적으로 위하여 인터페이스의 표현적 요소까지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인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전술한 유럽공동체지침에서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의미가 주어지지 못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독창적인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용제외 대상 가운데 프로그램 규약이 메뉴화면을 비롯한 인터페이스 또는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 또는 그들의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백히 하고(주54) 또한 그에 상응한 규정으로 최소한 유럽공동체 지침에서와 같이 그러한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 내기 위하여 수행하는 역변환 등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1)

The Arizona State Univ., LAST Frontier Conference, 30 Jurimetrics J.(1989) at 27.

주2)

Council Directive 91/250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rticle 1.

주3)

독일연방저작권법 제69의 a(보호대상) 제3조.

주4)

BGH, 14 July 1993, [1993] CR, pp.752-755; [1995] 11 CLSR 13.

주5)

OLG Karlsruhe, [1994] NJW-CoR, pp.301-303.

주6)

Andreas Gunther and Ulrich Wuermeling, Software Protection in Germany, [1995] 11 CLSR 15.

주7)

Thrustcode v. W.W.Computing, [1983] FSR at 507 and 508에서도 메뉴화면이 동일성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동일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Digital Communication Associates Inc. v. SoftKlone Distributing Corp., 659 F. Supp. 449(N.D.Ga. 1987)도 동일한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으나, M.Kramer Mfg. Co. v. Andrew 783 F. 2d 421(4th Cir., 1986)과 Broderbund Software Inc. v. Unison World Inc., 648 F. Supp. 1127(N.D.Cal. 1986)는 반대의 취지이다.

주8)

Bill Curtis, "Engineering Computer 'Look and Feel': User Interface Technology and Human Factors Engineering", 30 Jurimetrics J.51(1989).

주9)

Thomas M.S.Hemnes, "Three Common Fallacies in the User Interface Copyright

Debate,” [1990] Computer Law &Practice at 167; Pamela Samuelson and Robert J.Glushko,“Comparing the Views of Lawyers and User Interface Designers on the Software Copyright‘Look and Feel’Lawsuits,”30 Jurimetrics J. 121(1989).

주10)

Paul Goldstein,“Infringement of Copyright in Computer Programs,”47 Pittsburgh L. Rev. 1119(1986) at 1125; Alfred Z.Spector,“Software, Interface and Implementation,”30 Jurimetrics J. 79(1989) at 88; Jack E.Brown,“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Software and Some Patent Protection Parallels,”Computer Law &Practice(May/June, 1990) at 171.

주11)

[1986] AC 577(H. L.).

주12)

1993 FSR 497.

주13)

797 F. 2d 1222(3rd Cir., 1986).

주14)

1992 U.S. App. LEXIS 14305(2nd Cir., June 22, 1992).

주15)

1994 FSR 275.

주16)

1994 FSR 275.

주17)

지침은 최종적으로 Council에 의해서 확정·공포되는 것으로서, 회원국들은 지침에 규정된 일정한 목표들을 달성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각 회원국이 지침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즉 국내법률이나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등의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따라서, 지침은 회원국에 간접적인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국내법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각 회원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Regulation과는 상이한 것이다.

주18)

Council Directive 91/250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rticle 1(Object of protection).

1. 생략

2. 이 지침에 따른 보호는 어떠한 형태의 컴퓨터프로그램이든 당해 프로그램의 표현에만 적용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비롯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는 이 지침하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3. 생략

주19)

EC Council Directive 91/250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rticle 5(Exceptions to the Restricted Acts)

1-2. 생략

3.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권자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을 적재(loading), 표시(displaying), 실행(running), 전송 혹은 저장(storing) 등의 행위를 통하여 당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혹은 시험할 수 있다.

주20)

Article 9(1), 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주21)

EC Council Directive 91/250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rticle 6 (decompilation)

1. 독자적으로 창작될 컴퓨터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고, 그러한 정보획득에 있어서 제4조 (a) 및 (b)상의 코드에 복제 및 그 형식(form)의 변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복제 및 변환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이러한 행위가 이용권자(licensee)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기타의 제3자

또는 이러한 제3자 또는 이용권자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받은 자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우; 또한

(b)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제(a)호에 언급된 자에게 미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한

(c) 이러한 행위가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한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a) 독자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성 달성이라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b) 독자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성 달성이라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해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c)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해서 이용되거나 혹은 기타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3. 어문·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규정에 따라서, 본조의 규정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저작권제에 의한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아니된다.

주22)

Art. 6(2)(c), 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주23)

Art. 6(1)(b), 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주24)

미국의 Lotus Development Corp. v Paperback Software International Inc., 740 F Supp. 37 (D. Mass., 1990)사건에서 원피고의 프로그램코드 자체는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입력명령어가 동일하게 만들어 있음을 근거로 해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었는

데, 동일한 사건이 유럽공동체 지침에 의하여 다시 심리된다면 입력명령어의 동일성이 프로그램의 호환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될 수 있을 것이다.

주25)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면이 프로그램의 호환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26)

Thomas Dreier, the Council Directive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1991] 9 EIPR 319.

주27)

Case T-70/89; Official Journal of the EC No. C91, April 12, 1989, at 4; Lasercomb America, Inc. v. Job Reynolds, 911 F. 2d 970(4th Cir., 1990).

주28)

740 F. Supp. 37(D.Mass., 1990).

주29)

916 F. 2d 516(9th Cir., 1990).

주30)

7 CLJ 50(1990, CD Cal).

주3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 제2항.](#)

주32)

648 F. Supp. 1127(N.D.Cal., 1986).

주33)

797 F. 2d 1222(3rd Cir., 1986).

주34)

Whelan Associate, Inc. v. Jaslow Dental Laboratory, Inc., 797 F. 2d 1222(3rd Cir.,

1986).

주35)

Whelan Associate, Inc. v. Jaslow Dental Laboratory, Inc., 797 F. 2d 1222(3rd Cir., 1986) at 1244.

주36)

659 F. Supp. 449(N.d.Ga., 1987).

주37)

648 F. Supp. 1127(N.D.Cal., 1986).

주38)

659 F. Supp. 449(N.D.Ga., 1987).

주39)

[1989] 7 EIPR D-128(D.Conn. District Court, 30 Jan. 1989).

주40)

462 F. Supp. 1003(N.D.Tex., 1978).

주41)

Gregory C.Damman, "Copyright of Computer Display Screens: Summary and Suggestions," 17 Western State Univ. L.Rev. 31(1989) at 57; Janice M.Mueller, "Determining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User Interfaces," 9 Computer L.J. 37(1989) at 47; J.Dianne Brinson, "Copyrighted Software: Separating the Protected Expression from Unprotected Ideas, A Starting Point," 29 Boston College L. Rev. 803(1988) at 849; Paul Goldstei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Computer Programs," 47 Pittsburgh L.Rev. 1119(1986) at 1125; Jack E.Brown,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Software and Some Patent Protection Parallels," Computer Law & Practice(May/June, 1990) at 171.

주42)

Alfred Z.Spector, "Software, Interface, and Implementation," 30 Jurimetrics J. 79(1989) at 88; Stanislaw J.Soltysinski, 16 Rutgers Computer &Tech. L.J. 447(1990) at 451.

주43)

Jeffrey R.Benson,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Screen Displays," 72 Minnesota L. Rev. 1123(1988) at 1149; Alan S.Middleton, "A Thousand Clones: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Look and Feel' of Computer Programs," 63 Washington L.Rev.(1988) at 214.

주44)

Michael Alan Dailey, "Apple v. Microsoft and Hewlett-Packard," [1990] 2 EIPR 67.

주45)

49 F.3d 807(1st Cir., 1995).

주46)

982 F.2d 693(2d Cir., 1992).

주47)

동경고등재판소 1989.6.20. 결정(소위 System science사건); 판례시보 1322호, 138면.

주48)

동경고등재판소 1992.3.31. 결정.

주49)

동경지방법판소 1982.9.2. 민사 제29부 판결; 오오사카지방법판소 1983.3.30 제21민사부판결 소화54년(ワ)제3434호 부정경쟁방지법등금지등청구사건(소위 "World Invader 사건"); 판례タイムズ477호 82-86, 495호, 196-204면.

주50)

우리 나라 대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제목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제3부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 "20세기 미술의 모험"이라는 책 속에 미술분야에서의 중요사건을 문학, 음악, 영화, 과학, 정치 등의 항목과 비교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한 연표가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나라 대법원은 그 항목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연표에 소개된 사건과 사실 자체는 보호될 수 없는 것임을 밝혀 두고 있다([대법원 제2부\(타\) 1993.1.21.자 92마108 결정](#)).

주5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

주52)

미국저작권법 제102조 b항.

주53)

일본저작권법 제10조 제3항.

주5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 참조.